

수도법 시행규칙

[시행 2018.1.29.] [환경부령 제747호, 2018.1.29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하는 절수설비 중 변기의 최대 사용수량을 정할 때 전제가 되는 공급수압의 기준을 98킬로파스칼로 정하고, 온수·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최대토수유량을 온수와 냉수 중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 중 더 큰 값으로 구체화하는 등 절수설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설치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<환경부 제공>

개정문

○ 환경부령 제747호

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1월 29일

환경부장관 (인)

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변기

- 1)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
- 2) 대·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, 소변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
- 3)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,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

별표 2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"공급수압"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,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
별표 2 비고 제4호 단서 중 "토수유량을"을 "토수유량 중 큰 값을"으로 한다.

별표 2 비고 제6호 중 "작동"을 "1초 간 작동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한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 비고 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절수설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·제4호·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